

년도는 시장공모채 40억엔, 연고채 30억엔 합계 70억엔을 정부보증을 얻어 발행했는데, 1958년부터 1961년도까지는 시장공모채만을 발행했다. 이어 1962년에 이르러 지방공무원공제조합을 인수선으로 하는 정부보증이 없는 연고채(공제인수연고채)의 발행을 개시하고 1966년부터는 그 연고채의 20% 상당분에 대해 특별저리로 인수하게 되어 공제조합의 자금을 지방채자금으로 유효하게 활용하는 길이 열렸다.

그 후 1976년도에는 당해 년도에 한한 조치로서 금융기관인수연고채를 발행했다. 게다가 1983년부터는 자금조달수단의 다양화 및 자금코스트경감의 일환으로 새로이 외화채를 그리고 1984년부터는 지방공무원공제조합연합회인수에 의한 연고7년채를 발행하고 있다.

1999년도말 공영기업채권의 발행형태별 잔고내역은 시장공모채 15조 8,312억엔, 공제인수연고채 5조 701억엔, 외화채 7,718억엔으로 되어 있다. 또한 공고의 대부원자로서는 공영기업채권외에 정부출자금 및 공영경기납부금등이 있고 이중 정부출자금은 설립당초 5억엔이었는데, 1999년도말 누계로 166억엔이다.

공고는 시장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시장에서 평가를 얻으면서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함과 동시에 경영기반의 강화를 기하기 위하여 자금조달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다.

2) 대부액 및 대부이율

대부액은 1957년 71억엔에서 1999년 2조 1,377억엔으로 약 301배가 되고 1999년도말 현재 공사대부를 포함한 장기대부잔고는 22조 5,342억엔에 달하고 있다.

대부사업별로 보면 하수도사업이 8조 3,261억엔으로 전체의 37.0%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수도사업 5조 163억엔, 임시지방도로사업 4조 8,957억엔, 교통사업 1조 3,461억엔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대부이율은 원칙적으로 공고의 주요자금원인 공영기업채권의 발행코스트에 따라 그 수준으로 결정되는 기준이율과 이보다도 저리인 특별이율이 있다. 기준이율은 공영기업채의 조건개정에 수반하여 변동하고 있고 1999년도에 있어서는 5회 개정이 행해졌다.

그리고 기준이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는 특별이율에 의한 대부대상사업(특별사업)은 1966년도의 상수도사업에서 점차 확대되어 1997년부터 유료도로사업이 첨가되어 합계 13개사업이